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년



사랑의마을요양원

13 장 입·퇴소 관리 규정(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대 상)

1.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4. 기타 관계 당국의 정원 외 수용 지시에는 예외로 한다.
- ※ 요양원에 입소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라 정의 한다.

(계약 목적)

1. 요양원과 입소어르신, 그리고 보호자가 본 원을 이용 하는 기간 동안 본 원에서의 생활 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와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시설에서의 생활 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 연장 된다.
4.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 하고 재계약 없이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 ②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 ③ 비급여 항목(식비/간식비/상급침실료) 변경 시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안내문, 우편, 전자적방법, 간담회 등으로 통보 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관한 사항**)

1.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입소보호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 목적과, 계약 당사자 (시설주체,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사),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 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위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 서명 등 포함 작성하여 상호 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 한다.
3.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 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급여비용 및 이용료**) [별지 자료 첨부]

1.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2. 본 시설의 급여 및 비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① 식사재료비 1식 4,000원, 간식비 일일1,500원 산정
 - ② 시설(입소)급여는 본인부담율 20%

□ **입소일 (31일/20% 기준)**

(:원)

요양등급	일일급여	공단지원 보험료	입소어르신 본인부담금 + 비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식 대	간 식	계
1등급	90,450	2,803,950	560,790	372,000	46,500	979,290
2등급	83,910	2,601,210	520,240	372,000	46,500	938,740
3등급	79,240	2,456,440	491,280	372,000	46,500	909,780

3. 위 항에서 정하지 않은 내역 중 보호자나 입소어르신의 희망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요양원이 제공하지 않는 특별 프로그램, 개인용 물품 등)의 경우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4. 본 원의 비급여 내역은 물가상승 또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자와

변경할 수 있다.

5. 월 이용료는 일시금 선납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정산은 퇴소 시 결정한다.
6. 입소어르신(이하 보호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이용료를 3회 이상 지연 납입 할 경우 시설장은 보호자에게 퇴소를 요구할 수 있다.
7. 월 이용료 납입지연 또는 불납입으로 입소어르신 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시설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타 시설로 전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당사자의 의무, 신원인수인 권리 의무)

1.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 입소어르신(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 ② 입소어르신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⑤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⑥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⑧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⑨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해 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입소어르신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③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④ 요양원 내에서 요양원 규칙이나 요양원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요양원 운영 또는 타 입소어르신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어르신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⑥ 1회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 어르신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를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⑧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⑨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파손·멸실 하였을 경우

< 비급여 항목 및 비용 >

비급여 항목	금액
식사 재료비	4,000원(1식)
간식비	1,500원(1일 1회)
이 미용비	
기타(상급침실비용)	100,000원(월)

<본인부담금 비율 >

구분	시설급여
일반	20%
기초수급권자	0%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본인부담금 100분에 60) (본인부담금 100분에 40	감경 8%, 12%